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1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,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 소속하에"를 "국무총리 소속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"위원장"을 "제4항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공동위원장(이하 "공동위원장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"을 "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"을 "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대통령이"를 "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조성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국무총리
- 2.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촉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동위원장은 각자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29조제6항(종전의 제5항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위원회"를 "조성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7항까지의 규정"을 "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"으로, "조직·운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"을 "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"으로 한다.

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사임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지명된 공동위원장 및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공동위원장이 지명되거나 후임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	제29조(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
위원회)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	위원회) ①
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	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대통령</u>	<u>국무</u>
<u>소속하에</u> 아시아문화중심도시	총리 소속으로
조성위원회(이하 "조성위원회"	
라 한다)를 둔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<u>위원장</u> 이 필요하다	8 <u>제4항에 따른 조성위</u>
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	원회의 공동위원장(이하 "공
사항	<u>동위원장"이라 한다)</u>
② 조성위원회는 <u>위원장 1인 및</u>	② <u>공동위원장 2명</u>
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	<u>을 포함한 30명</u>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
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	3
각 호의 사람이 된다.	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	1
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·	
외교부장관 · 행정안전부장관	
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산업	
통상자원부장관 · 환경부장관	
· 국토교통부장관 · 국무조정	
실장 · <u>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</u>	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
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. (생 략)

- 3.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대통령이</u> 위촉하 는 사람
- 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, 부위 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 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으로 한다.

<신 설>

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- ______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----- 국무총리가 성별을

----- <u>국무종리가 성별을</u> 고려하여 --

- ④ 조성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국무총리
- 2.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(이
 하 이 조에서 "위촉위원"이라
 한다)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
 하는 사람 1명
- ⑤ 공동위원장은 각자 조성위원 회를 대표하고 조성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.
-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 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사임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지명된 공동위원장 및 새로 위촉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
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- ① (생 략)

장 및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
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
공동위원장이 지명되거나 후임
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
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<u>⑧</u> 조성위원회
<u>⑨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⑩</u> <u>제9항까지에서 규정</u>
한 사항
그리 스시 트게 되스티 나타